

포상금 지급 기준(제75조제4항 관련)

신고인 유형	지급기준	
	징수금의 금액	포상금의 금액
1. 요양기관 관련자 가. 요양기관에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의사, 약사, 간호사, 의료기사 및 그 밖의 직원 등이 그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나. 약제·치료재료의 제조업자·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었던 사람이 요양기관을 신고하는 경우	1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	징수금 $\times$ 30/100
	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	300만원 + [(징수금 - 1천만원) $\times$ 20/100]
	5천만원 초과	1,100만원 + (5천만원 초과 징수금 $\times$ 10/100) 다만, 10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.
2. 요양기관 이용자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,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진료와 관련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요양기관을 신고하는 경우	2천원 이상 2만5천원 이하	1만원
	2만5천원 초과	징수금 $\times$ 40/100 다만, 5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.
3. 그 밖의 신고인 제1호와 제2호의 사람 외의 사람이 요양기관을 신고하는 경우	1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	징수금 $\times$ 20/100
	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	200만원 + (1천만원 초과 징수금 $\times$ 15/100)
	2천만원 초과	500만원의 범위에서 350만원 + (2천만원 초과 징수금 $\times$ 10/100)

비고

1. "징수금"이란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요양급여비

용에 대하여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.

2. 위 표의 징수금의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.
3. 위 표의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된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1천원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.